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조사 및 제출 의무화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80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 목 차

|                                                               |   |
|---------------------------------------------------------------|---|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2207080)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조사 및 제출 의무화<br>(안 제11조의2 신설) ..... | 2 |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2207080)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2. 30.

다. 회 부 일 : 2024. 12. 3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조사 및 제출 의무화 (안 제11조의2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제11조의2(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조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마다 조사구역 내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이하 “운영현황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p> <p>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운영현황조사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p>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제3항제3호1)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2021. 7. 13. 시행).

### 1)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022년 9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전국 999개소였고, 이 중 2024년 12월말 현재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노상주차장이 27개소임.(참고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2<sup>2)</sup>에서는 시장등<sup>3)</sup>은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의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sup>4)</sup>이 1년 마다 조사구역 내 ①어린이 보호구역, ②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조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4)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만이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3<sup>5)</sup>에서는 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4<sup>6)</sup>에서는 시장등이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6)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2조의3과 제12조의4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규칙”) 제8조<sup>7)</sup>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를 규정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이를 「주차장법」에 따라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하고(규칙 제8조제2항),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규칙 제8조제3항).

그 밖에도 규칙 제11조<sup>8)</sup>에서는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8)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예산

에는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과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자체장의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과 경찰청 통보 등 보호구역 통합관리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제도 도입 필요성을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효과성과 상호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국토교통부 의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연 1회 이상)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또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 사무로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장이 설치·폐지 및 관리하는 주차장임. 도로교통법령에 지자체장은 매년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지정·관리계획 시행에 필요 소요예산을 편성 조치토록 기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도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

## 참고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현황(2024년말 기준)

| 구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br>(2022.9월 기준) |        |       |       |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폐지 노상주차장 현황<br>(2024.12.31. 기준) |     |       |    |    |     |
|----|------------------------------------|--------|-------|-------|-----|--------|--------------------------------------------|-----|-------|----|----|-----|
|    | 계                                  |        | 거주자전용 |       | 공영  |        | 계                                          |     | 거주자전용 |    | 공영 |     |
|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 합계 | 999                                | 16,537 | 336   | 4,348 | 663 | 12,189 | 27                                         | 518 | 3     | 17 | 24 | 501 |
| 서울 | 101                                | 1,381  | 97    | 1,312 | 4   | 69     | -                                          | -   | -     | -  | -  | -   |
| 부산 | 181                                | 2,175  | 150   | 1,600 | 31  | 575    | -                                          | -   | -     | -  | -  | -   |
| 대구 | 25                                 | 2,473  | 5     | 159   | 220 | 2,314  | 10                                         | 113 | 3     | 17 | 7  | 96  |
| 광주 | 8                                  | 115    | -     | -     | 8   | 115    | -                                          | -   | -     | -  | -  | -   |
| 인천 | 188                                | 4,414  | 8     | 153   | 180 | 4,261  | 2                                          | 5   | -     | -  | 2  | 5   |
| 대전 | 60                                 | 1,295  | 15    | 236   | 45  | 1,059  | -                                          | -   | -     | -  | -  | -   |
| 울산 | 19                                 | 316    | 17    | 179   | 2   | 137    | 2                                          | 137 | -     | -  | 2  | 137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117                                | 2,110  | 44    | 709   | 73  | 1,401  | 3                                          | 35  | -     | -  | 3  | 35  |
| 강원 | 17                                 | 362    | -     | -     | 17  | 362    | 2                                          | 27  | -     | -  | 2  | 27  |
| 충북 | 9                                  | 175    | -     | -     | 9   | 175    | -                                          | -   | -     | -  | -  | -   |
| 충남 | 17                                 | 400    | -     | -     | 17  | 400    | 1                                          | 27  | -     | -  | 1  | 27  |
| 전북 | 2                                  | 92     | -     | -     | 2   | 92     | 2                                          | 46  | -     | -  | 2  | 46  |
| 전남 | 2                                  | 62     | -     | -     | 2   | 62     | -                                          | -   | -     | -  | -  | -   |
| 경북 | 15                                 | 212    | -     | -     | 15  | 212    | 3                                          | 85  | -     | -  | 3  | 85  |
| 경남 | 22                                 | 638    | -     | -     | 22  | 638    | 1                                          | 10  | -     | -  | 1  | 10  |
| 제주 | 16                                 | 317    | -     | -     | 16  | 317    | 1                                          | 33  | -     | -  | 1  | 33  |

자료 : 국토교통부